

국 토 교 통 부

훈계 · 시정 요구

제 목 창원들녘 지표수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창원시

관 련 자 ① 창원시 ○○○○과(전 ○○○○과) 지방○○사무관 ○○○

② 창원시 ○○○○과(전 ○○○○과) 지방○○주사 ○○○

③ 창원시 ○○○○과 지방○○주사보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사무관 ○○○은 2015. 7. 10.부터 2016. 7. 11까지 ○○○○과장으로
로서 창원들녘 지표수개발사업 감독책임자 업무를 담당하였고, 지방○○주사 ○
○○는 2014. 1. 13.부터 2016. 7. 11까지 ○○○○ 지표수개발사업 실무책임자
업무를 담당하였고, 지방○○주사보 ○○○은 2015. 1. 15.부터 감사일 현재까지
○○○○ 지표수개발사업 실무담당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경상남도 창원시에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활력
증진 지역개발사업 목적으로 총사업비의 50%에 해당하는 5,000,000,000원의 국
고보조금을 교부받아, ○○○○○공사(○○지사)와 ‘○○○○ 지표수 보강 개발
사업’을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¹¹⁸⁾하고 사업비 10,000,000,000원(국비 50억+지방비
50억)을 교부하였고, 2015. 12. 31.까지¹¹⁹⁾ ‘○○○○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’에

118) 경상남도 창원시(○○○○과)는 2010. 7. 29. ○○○○○공사(○○지사)와 경상남도 창원시 ○○구
○○면 ○○리 외 5개리 일원에 시설특작 및 채소단지에 정수처리된 맑은 물을 공급하여 농촌의 소
득증대 도모를 위한 ‘○○○○ 지표수보강개발사업’ 기본계획수립, 세부설계, 공사감리 등 사업시행
전반에 대하여 일괄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

119) 창원시에서 경상남도로부터 승인받은 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(경상남도 고시 제2015-000호, 2015. 00.
00)에 따르면 사업예정기간은 2012. 4.부터 2015. 12.까지로 되어 있음.

9,979,037,300원¹²⁰⁾을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, 20,962,700원(국고분: 10,481,350원)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다.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

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,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고, 제2항에 따르면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.

또한, 2010. 7. 29. ○○시와 ○○○○○공사 간 체결한 위 ‘○○○○ 지표수보강개발사업’ 위·수탁 협약서 제4조에 따르면 ○○○○○공사(○○지사)는 수탁업무 종료 후 준공 정산서를 창원시에 제출하고 교부받은 사업비의 잔액은 창원시에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, 동 협약서 제6조에 따르면 ○○○○○공사(○○지사)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설계에 착수하고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창원시의 승인¹²¹⁾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며,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준공 정산서를 창원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런데 창원시에서는 ○○○○○공사(○○지사)가 위탁·시행한 ‘○○○○ 지표수보강 개발사업’이 2015. 12. 31. 완료된 사실을 알고¹²²⁾ 있었으므로 준공

120) 집행금액(①+②+③+④+⑤+⑥) = 9,979,037,301원 [집행잔액 20,962,700원]

① 토목건축 공사비 4,181,593,000원, ② 전기 공사비 220,228,900원, ③ 제어계측 공사비 118,450,760원, ④ 관급자재비 3,630,126,100원, ⑤ 위탁수수료(기본조사, 세부설계, 공사감리, 사업관리) 1,087,357,351원, ⑥ 보상비 등 741,281,190원

121) 창원시에서 경상남도로부터 승인받은 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(경상남도 고시 제2015-449호, 2015. 10. 29)에 따르면 유량계 설치개소는 당초 723개에서 680개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있음

122) 창원시(○○○○과)에서는 2015. 12. 15. 위 사업이 2015년 12월 말 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

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하고 집행잔액을 반납 받아 국고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했는데도, 공사가 준공된 지 11개월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(2016. 11. 30.)까지 정산하지 않고 있다.

이에 감사기간 중 확인한 결과, ○○○○○공사(○○지사)에서는 2015. 12. 31. ‘○○○○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’을 준공하면서 발생한 집행 잔액 20,962,700 원(국고보조금 10,481,350원)을 [표]와 같이 2016. 6. 21.과 같은 해 6. 24. 임의로¹²³⁾ 관리동 냉난방기 구입 및 유량계 설치공사비로 집행하였다. 그 결과, 국고보조금 10,481,350원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.

[표] “○○○○○○공사의 집행잔액 사용내역”

(단위 : 원)

사용내역	집행금액(a)	국고보조금 (a×50%)	지출일자
계	20,962,700	10,481,350	
관리동 냉난방기 구입	3,833,560	1,916,780	2016.6.24
유량계 설치공사	17,129,140	8,564,370	2016.6.21.

* 창원시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 창원시장은

[훈계]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[시정] ○○○○○공사(○○지사)가 목적 외로 사용한 국고보조금 10,481,350원 상당액을 회수하여 국고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.

[통보]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○○○○○공사 ○○지사 관련자(○○○○부 ○급 ○○○, ○○○○부 ○급 ○○○)에 대해 문책토록 ○○○○○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.

사업준공 후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이관 협의를 하였으며, 2016. 3. 23. 시설물 위·수탁 운영 및 관리 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 위(수)탁 협약을 ○○○○○공사와 체결하였으므로 ○○○○○공사에서 위 사업을 2015. 12. 31. 준공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

123) 창원시에서 경상남도로부터 승인받은 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(경상남도 고시 제2015-449호, 2015. 10. 29)에 따라 유량계를 당초 723개소에서 680개소로 43개를 감하는 것으로 시행계획을 변경되었으나, 2016. 5. 9. 한국농어촌공사(창원지사)에서는 위 사업이 준공된 후 주민들의 유량계 추가설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창원들녘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을 사용하여 유량계 20개소를 추가설치 하였음